



공정거래위원회

수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
(경유)

제목 표준약관 개정 통보 및 사용권장 요청

1. 귀 협회 및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우리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·시행(2014.8.7.)으로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, 2014. 9. 19.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(이하 “약관법”이라 한다) 제19조의3(표준약관)에 근거하여 「이사화물 표준약관」 등 13개의 표준약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.

3. 우리 위원회는 개정된 13개 표준약관을 약관법 제19조의3 제5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(www.ftc.go.kr) 등에 공시하고, 귀 협회 및 회원사에게 그 사용을 권장하오니 개별약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공정한 약관의 사용방지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 표준약관이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(www.ftc.go.kr)의 “정보마당-표준계약서-표준약관양식”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

4. 귀 협회와 회원사들이 위 표준약관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우리 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 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합니다(약관법 제19조의3 제6항).

나.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(약관법 제19조의3 제8항).

※ 표준약관에서 규정된 내용 중 표준약관보다 고객에게 더 유리한 내용의 약관은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있음.

※ 표준약관표지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「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」 참조

다.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약관법 제19조의3 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 약관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입니다(약관법 제19조의3 제9항).

라. 약관법 제19조의3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, 약관법 제19조의3 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붙임 : 1. 개정 표준약관 1부. (개별 송부)
2. 신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



행정사무관

김태종

약관심사과 전결 2014. 10. 1.

과장

황원철

협조자

시행 약관심사과-3353

(2014. 10. 1.)

접수

우 339-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3층 320호 약 / www.ftc.go.kr
관심사과

전화번호 044-200-4452 팩스번호 044-200-4479 / ktj317@korea.kr / 비공개(6)